

「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1. 10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2. 제안이유

-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신설된 조로 이동하여 재규정함.(안 제6조제12호 삭제)
- 적성 검사,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저연차 공무원의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직 적착을 유도하고 공직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의2에서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기를 높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

맞춤형 교육·복지제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,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~라. (생략)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~카. (생략)

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~④ (생략)